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۷ 월 ۱۱ 일

여 수 시 장 ۳۲۰۱۱۸



여수시 조례 제1910호

붙임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이 살던 집이나 지역 안에서 보건·의료·주거·요양·돌봄 등 독립적·개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현금·현물, 서비스 등 체계의 전체를 말한다.
2.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이하 “통합돌봄기관”이라 한다)이란 돌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통합돌봄의 대상) 통합돌봄의 대상(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수시민으로서 고령·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 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 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한다.

1. 기본목표·추진방향,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자 발굴과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추진 사업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통합돌봄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돌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케어회의) ① 시장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역케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케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대상자에 관한 사례회의
2. 프로그램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관한 사항
3. 대상자에 관한 자원, 통합지원 및 통합돌봄기관 연계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의료·재택진료·찾아가는 보건의료원 지원 사업
2. 건강·돌봄·요양 지원 사업
3. 대상자의 안전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사업
4. 주거환경개선사업
5. 응급안전 알림 등 스마트 돌봄 및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사업

6.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욕구조사, 연구, 성과, 평가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합돌봄사업

제8조(통합돌봄 제공기관 선정 및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통합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을 통합돌봄 제공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 제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증진 및 참여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1. 주민 및 단체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물품, 교육자료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① 시장은 통합돌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한다.

1. 통합돌봄 실행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제공자와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